

해수부·해양경찰청 등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 점검 추진

- 7.15부터 8.2 3주간 어업 기인 폐어구 집중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에 걸쳐 폐어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44-200-5603)
		담당자	사무관	정광준 (044-200-5604)
담당 부서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책임자	과 장	하창우 (032-835-2097)
		담당자	서기관	양 관 (032-835-2197)

□ 목적

- 어구 생산·판매 업체 및 어구·부표 사용 어업인에 대한 관련 제도* 이행현황 점검·단속 및 어구 관리 강화 인식 제고

* (수산업법)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어구실명제 등 (해양환경관리법) 폐어구 등 불법투기 금지 (어장관리법)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 점검·단속 개요

- (참여 기관) 해수부(11개 지방해양수산청, 3개 어업관리단), 해경청(20개 지방해양경찰서), 지자체(시·도, 시·군·구), 수협
- (점검 기간) '24. 7. 15 ~ 8. 2. (3주간) * (사전 계도) '24.7.1~7.12(2주)
- (점검 대상)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선구점 포함) 업체, 양식장
- (점검 내용) 어업인 폐어구 적법처리,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 여부 등
- (점검반 구성)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해양환경감시원),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어업감독공무원)

□ 점검·단속 내용

대상	주요 점검 내용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 ▶ 어구실명제 이행 ▶ 통발어선 보증금제 대상 어구 사용 등
어구 생산·판매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판매 신고제 이행 여부(신고증, 기록관리) ▶ 어구 보증금제 이행 대상 통발 생산·판매 업체 (보증금 표식 부착 어구 생산·수입 점검)
양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부표 사용 및 폐부표 적법 처리 여부 ▶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준수 여부